

KCGS Report

제13권 3호 | 통권 제159호
2023.3.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3권 3호

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3권 3호 | 2023. 3.

● ESG 동향

- 미국의 허위·과장 ESG 공시 규제 동향	2
-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분석	9
- 국내 기업의 업종별 ESG 중대성 이슈 현황 (1) (에너지, 식품 및 음료, 은행,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20

Global News

- EU 의회, 디지털 플랫폼 중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지침안 의결	39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잠정 협정안 타결	41

미국의 허위·과장 ESG 공시 규제 동향

유고은*

- ▶ 2022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전반에 ESG 공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주요 ESG 공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높아진 투자자의 기대 및 규제 강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 최근 주요 ESG 공시사례로는, 투자설명서 내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ESG투자 범위를 과장 보고함으로써 투자설명서, 입찰제안요청서상 ESG 관련 정보가 과장되어 공시된 BNY멜론투자자문의 사례, 지속가능보고서에 허위로 취득한 광산담 안전성 인증 결과를 공시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광산회사 발레(Vale)의 사례임
- ▶ SEC의 제재 근거는 ESG 특정 조항이 아닌 증권법, 증권거래법 등 전통적인 법률로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아닌, 허위·과장의 ESG 공시에 따라 투자자 피해 또는 자본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한해 규제 압력을 가하고 있음
- ▶ 다만 발레(Vale) 소송과정에서 보인 SEC의 태도는 재무적 영향이 강조된 이중 중대성 접근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소송 경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검토 배경

-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둔 기업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특히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 ESG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2017년 TCFD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권고안¹⁾이 발표된 지 5년이 된 2022년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 초안²⁾, EU의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³⁾,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초안 등이 발표되면서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규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 금융회사 및 상품 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하고 있고, 2022년 11월에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파트장), blessingon@cgs.or.kr

1) Recommendation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2017.6.)

2) Draft: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ISSB),(2022.3.31.)

3)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EFRAG, 2022.5.2.)

- 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최종 승인함⁴⁾
-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Forms S-1, S-3, F-1, F-3) 및 정기 공시(periodic reports, Forms 10-K, 10-Q, 20-F) 항목 등에 기후 관련 리스크 항목을 포함시키는 공시 규칙 개정안(Regulation S-K, Regulation S-X)을 제안함⁵⁾
 -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요구사항을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한국 또한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해 단계적인 환경 및 사회 정보공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2025년부터 환경 및 사회 정보 공시 강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기업들이 ESG 공시 규제 강화 및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ESG 공시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22년 중 발생한 허위·과장 ESG 공시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2022년 SEC의 ESG 관련 주요 규제사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활동내역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⁶⁾ 투자자에 대한 ESG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SEC 또한 상장사 및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ESG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기업공시의 중요성 및 정확성,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관점에서 규제를 집행하고 있음을 밝힘
- SEC의 2022년 활동내역 공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집행 조치건은 9% 증가한 760건이었으며, 이에 수반된 과징금(Civil Money Penalty), 이득토출책임(disgorgement)⁷⁾, 판결 전 이자(Prejudgment interest) 등 금전적 제재규모는 64억 4천만 달러로 2021년의 2배 가량에 해당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함
- 적극적인 규제 확장 흐름과 함께 SEC는, ESG 이슈를 근거로 6개사를 기소하였으며, 이 중 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 Vale S.A., Wahed Invest, LLC, 사에 대한

4) 이에 따라 NFRD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와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기관 역할 등 2024년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5) 기업경영이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리스크를 등록신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별도 섹션(Climate-Related Disclosure)에서 제공하고(Regulation S-K, 개정사항), 기후관련 재무제표 매트릭스 및 관련 공시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공(Regulation S-X, 개정사항)하며 제공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6) SEC Announces Enforcement Results for FY22, SEC.,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206>

7) 영미 부당이득법제 중 하나인 이득토출책임은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개념에 해당함

집행사례를 2022년 주요 사례로 소개함

- 이하에서는 2022년 SEC의 ESG 관련 규제사례 중 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 Vale S.A.에 대한 내역을 소개하고자 함

□ **(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22년 5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 1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멜론)의 자회사인 BNY멜론투자자문(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 BNYMIA)을 ESG 투자자문 관련 과징금 공시(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시 및 주요정보 누락)로 기소하였고, 회사는 과징금 150만 달러(약 19억 원)를 내는 것으로 합의함⁸⁾

○ BNY멜론투자자문은 뮤추얼펀드 투자설명서를 통해 모든 투자 결정시 ESG 품질 검토를 거쳤음을 공시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였으나, 2019년 1월~2021년 3월 사이 BNY멜론투자자문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내린 투자결정 중 상당수가 ESG 품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BNY멜론투자자문은 투자자 및 펀드 이사회에 대해 오버레이(Overlay)⁹⁾ 펀드의 투자자문사(Sub-adviser)가 펀드의 ESG 품질을 검토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설명하였으며, 다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입찰제안요청서(RFP)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해옴

〈표 1〉 투자설명서상 공시내역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된 외부 투자자문사(Sub-adviser)는 책임투자에 대해 잘 확립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ESG 문제가 고려되도록 투자자문사의 독점 품질 검토를 통해 연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험, 기회 및 문제를 식별하고 고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Integrated into the investment process, [the Sub-Adviser] has a well-established approach to responsible investment. This process includes identifying and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isks, opportunities and issues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via [the Sub-Adviser’s] proprietary quality review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any material ESG issues are considered.”

- 회사는 ESG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는 ‘ESG 투자원칙’ 및 ESG 투자원칙을 실행하고 ESG 이슈를 분석하는 ‘책임투자팀’을 보유하고 있으나, 책임투자팀을 통해 반드시 ESG 품질 검토가 이뤄지는 뮤추얼펀드는 지속가능펀드에 한정되어 있었음
- 문제가 된 오버레이(Overlay) 펀드를 포함한 여타의 뮤추얼펀드 운용시 투자자문사는

8) BNY Mellon Investment Adviser, Inc., Release No. 6032, File No. 3-20867 (SEC, 2022.5.23), <https://www.sec.gov/litigation/admin/2022/ia-6032.pdf>

9) 해외투자에서 자산운용으로부터 환을 분리하여 별도로 운용하는 전략

- ESG 품질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주식과 회사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펀드에서 ESG 품질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됨
- 일례로 2019년 1월~2021년 3월 기간 중 1개의 오버레이 펀드가 투자한 185건 중 67건은 ESG 품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21년 3월 기준 운용 펀드 순자산의 25%에 달하는 규모였음
 - SEC는, BNY멜론투자자문이 투자설명서 내용 결정을 논의하는 오버레이 펀드 이사회에서 'ESG 요소를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한다고 진술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입찰제안요청서 내역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허위로 공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과실에 의한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206(2)항, 206(4)항, Rule 206(4)-8항, 206(4)-7항 및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34(b)항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힘
 - BNY멜론투자자문 제재건과 유사하게, SEC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¹⁰⁾ 및 Wahed Invest¹¹⁾에 대해 공시사항과 달리 ESG 투자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함
 - **(Vale S.A. 소송)** 2022년 4월 28일, SEC는 안정성 문제가 있는 댐에 대해, 지역 사회 및 투자자에게 댐의 안전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혐의로 브라질의 광산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철강석 생산업체인 Vale S.A.를 기소하였음. 회사는 이에 항소하여 사건이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계류 중임¹²⁾
 - 2019년 1월, 브라질 남동부 브루마지뉴 지역 내 Vale사 철광산 광산의 폐기물 저장댐 붕괴로 270명이 사망하고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Vale의 시가총액이 40억 달러 가량 하락하여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짐.
 - 광산댐 붕괴로 2만명 이상이 대피하였으며 철, 망간, 알루미늄, 구리 등 광물이 포함된 독성 진흙이 29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퍼져 주변의 강과 저수지가 오염됨
 -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Vale은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2015년~2019년 지속가능보고서는 댐 안정성 평가에 있어 '가장 엄격한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10) ESG펀드의 편입 자산의 80%를 자체 운용기준에 충족되는 주식으로 구성하고 술·담배·무기·석탄·원유·천연가스 판매업 기업을 배제한다는 투자정책을 공개해왔으나, 해당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 자세한 내역은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Release No. 6189, File No. 3-21245 (SEC, 2022.11.22), <https://www.sec.gov/litigation/admin/2022/ia-6189.pdf>

11) 이슬람법·샤리아법을 준수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법률 준수 여부를 보장한다는 서면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을 통해 투자결정 및 자산배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Robot + Advisor 의 합성어)인 Wahed Invest, LLC를 기소함. 자세한 내역은 Wahed Invest LLC., Release No. 5959, File No. 3-20750 (SEC, 2022.2.10.), <https://www.sec.gov/litigation/admin/2022/ia-5959.pdf>

12) Complaint & Demand for Jury Tri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Vale S.A., No. 22-cv-2405 (E.D.N.Y. Apr. 28, 2022) (Compl.). <https://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22/comp-pr2022-72.pdf>

있으며, 댐의 안정성 상태는 100%라는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공시함. 이에 대해 SEC는 증권 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hange Act) Section 13(a) 보고규정 위반 및 증권법(Securities Act) Section 17(a) 사기 방지조항 위반을 근거로 고의에 의한 허위 공시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임

- 소송과정에서 SEC는 1) Vale가 브루마지뉴 댐 안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국제표준은 물론이고 Vale사 자체 안전 표준 또한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했다는 점¹³⁾, 2) 특별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브루마지뉴 댐 안정성 인증과정에서 Vale사의 의견을 따르기를 거부한 감사인을 해임한 후 다른 감사인을 협박하여 허위의 인증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¹⁴⁾, 지속가능보고서 내 댐 안정성 관련 진술은 고의에 의한 허위 공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시라고 주장함
- 특히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SEC의 소장 청원서에서는, Vale가 미국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폐기물 저장댐의 안전성을 은폐한 행위는 투자자들에 대한 증권 사기이며, 기업 재무상황 및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함¹⁵⁾

○ 법원 또한 Vale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등 ESG 관련 법적 분쟁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20년 5월 20일, 법원은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내 진술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하여 기업이 이행할 수 없다’는 Vale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지속가능성은 핵심 사업·경영사항의 일부이며, 광산업에게 있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생존의 문제’라고 판결함.¹⁶⁾ 더불어 2022년 3월 31일, Vale사에 대한 주주들의 집단소송 또한 허용됨¹⁷⁾

시사점

- (내부통제 및 마케팅에서 ESG전략을 고려) 투자회사 및 펀드에 대한 SEC의 최근 규제 방향은, ESG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투자사의 경우 내부통제장치 구현 및 마케팅 전략 수립시 ESG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ESG 이슈에 대한 SEC의 적극적인 규제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2021년 4월에 발표된 ESG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 발표의 일환으로서¹⁸⁾ SEC의 ESG 관련 규제 동향은 지속될

13) Id. at ¶ 14.

14) Id. at ¶ 15.

15) Id. at ¶ 1.

16) 광산댐 안정성 문제는 브라질 광산산업에서 잘 알려진 위험에 해당함. 관련된 참고자료로는 Rodrigo Menegat Schuinski, Brazil dams: 1 million live close to danger (2022.4.29.)

<https://www.dw.com/en/brazil-dams-1-million-live-close-to-danger/a-61523548>

17) Vale S.A. Securities Litig., C.A. No. 19-CV-526-RJD-SJM (E.D.N.Y).

18) The Division of Examinations' Review of ESG Investing(2021.4.9.),

- 것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통제제도 및 마케팅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ESG 투자 위험경고에서 SEC는, ESG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함
 - 투자 전략 및 프로세스에서 ESG 요소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 및 절차
 - 위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 ESG 전략 및 마케팅, 공시 관련 내부통제장치
 - ESG 전략과 실제 이행사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 특히 ESG 투자 위험경고에서는 개정된 투자자문업자법 규칙에 따라¹⁹⁾ ESG 투자 공시에 다음과 같은 광고/마케팅이 금지됨을 강조함
 -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중요사실의 생략
 -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형태의 중요 진술이 포함된 경우
 - 중요사실에 관련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암시
 -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잠재적인 이익만을 공시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 투자조언을 포함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성과나 성과기간을 배제 또는 포함

- **(사회운동 캠페인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의 ESG 규제)** SEC 규제의 초점은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이 아닌, 미국 자본시장 및 투자자가 입은 손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흥미롭게도 SEC의 ESG 규제는 ESG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증권법 (Securities Act), 증권거래소법(Exchange Act),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통적인 법제도에 근거하고 있음. 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SEC의 조치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겠으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투자자 손해배상
 - 기업이 향후 환경 및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간접적·사전적(ex ante)인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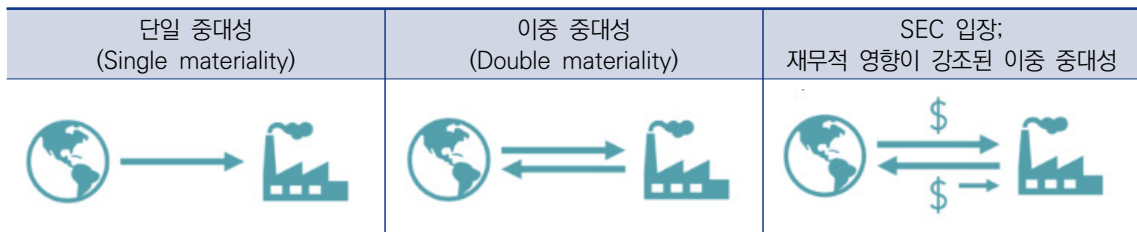
<https://www.sec.gov/files/esg-risk-alert.pdf>

19) Final Rule: Investment Adviser Marketing, Release No. IA-5653 (Dec. 22, 2020)., <https://www.sec.gov/rules/final/2020/ia-5653.pdf>

-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ESG 공시가 사기방지규정 및 공시규정 위반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경영진이 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중대성(Materiality)에 대한 SEC의 접근방식)** SEC는 공시가 요청되는 중대성(Materiality) 개념을 기업이 환경과 사회로부터 받는 재무적 영향에 관한 것으로 보는(Outside-in perspective)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을 공개하였으나, Vale 소송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기업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 ((Inside-out perspective) 또한 확인되어, SEC의 입장이 재무적 영향이 강조된 이중 중대성 접근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TCFD, ISSB 등 IFRS 재단 중심의 기구들이 수립하고 있는 보고기준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로부터 받는 재무적 영향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며 이를 Outside-in perspective 또는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 관점이라고 분류함. 한편 GRI 및 ESRS의 보고기준은 기업이 직면한 ESG 리스크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Inside-out perspective 또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에 해당함
 - SEC는 증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권신고서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섹션에 포함되어야 할 중대성(Materiality)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또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있어, Outside-in perspective에 해당함
 - 한편 Vale 소송과정에서 SEC는 광산댐 붕괴로 투자자 및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성 은폐가 환경과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가 높아졌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 위험은 공시되어야 했다고 항변함
 - 이와 같은 SEC의 태도는 재무적 영향이 강조된 이중 중대성 접근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 즉 기업이 직면한 ESG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대해 미친 ESG 영향을 ESG 관련 정보로 분류하며, 관련 ESG 요소가 회사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림 1〉 중대성 평가 접근방식 도식화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분석

임선영*

- ▶ 그린워싱의 개념이나 그린워싱을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모든 행위가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으로 지칭되고 있음
- ▶ 그린워싱의 본질은 결국 ‘부적절한 라벨링’으로, 라벨링을 실시하는 주체와 목적물에 따라 그린워싱을 크게 세 가지 유형(A-협회의 그린 워싱, B-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C-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연관된 그린워싱 사례를 소개함

검토 배경

-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친환경 위장술)이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포괄함
 - 그린워싱은 2007년 테라초이스(TerraChoice)가 발표한 “그린워싱의 6가지 죄악들(The Six Sins of Greenwashing : A Study of Environmental Claims in North American Consumer Markets)” 보고서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그린워싱이 학술적으로 검증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요건, 명확한 정의는 부재함¹⁾
- 그린워싱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경영에서 ESG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동시에 자본이 ESG 관련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워싱이 나타나고 있음
 - 상품 마케팅 영역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넘어 특정 기업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이나 소송, ESG펀드에 대한 규제까지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모든 행위가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으로 지칭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연구 문헌 및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그린워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며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 lsy@cgs.or.kr

1) 배순영, 박윤영, 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그린워싱의 개념 및 유형

- 그린워싱 용어는 미국의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드(Jay Westerveld)가 1986년 쓴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함
 - 환경 보호를 위해 타월을 재사용해달라는 호텔 홍보 문구에 대해 호텔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타월 재사용을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색으로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의미로 '그린워싱'을 사용함
- 일찍이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을 “기업의 환경 관행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편익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²⁾로 정의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상품과 환경성 주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수립한 바 있음
 - 테라초이스가 제시하는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은 1) 상충효과 감추기(Hidden Trade-off), 2) 증거 불충분(No Proof), 3) 애매모호한 주장(Vagueness), 4) 관련성 없는 주장(Irrelevance), 5) 거짓말(Fibbing), 6) 두 가지 악 중 덜한 것(Lesser of Two Evils, 유해상품 정당화), 7) 허위 라벨 부착(Worshipping False Labels), 7가지로 구분됨
- 이밖에 정부, 연구자료, 언론 등 여러 출처에서는 그린워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조치 또는 누락에 의해 기업의 공시자료 또는 금융상품의 특성/목적이 기업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위험(risk)과 영향(impact)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 관행³⁾
 -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상품 표시·광고·홍보가 허위 혹은 과장되어, 단지 친환경적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⁴⁾
 -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으로 기업 이미지를 각색하는 행위⁵⁾
 - 기업의 제품, 목표, 정책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광고 또는 마케팅의 한 형태⁶⁾
- 테라초이스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 및 미디어는 공통적으로 '부적절한 라벨링'을 그린워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떤 주체⁷⁾가 특정 대상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라벨링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2) 프레시안, “그린 워싱의 7가지 죄악”, 2021.7.8

3) ESMA, 2022.2.10.,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

4) 배순영, 곽윤영, 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5) 조선일보, “이 정도면 '녹색 사기' 아닌가... ESG펀드, 화석연료회사 평균 17곳에 투자”, 2023.2.24

6) <https://en.wikipedia.org/wiki/Greenwashing>

7)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도 될 수 있으나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으로 한정함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이를 ESG위험 및 그린워싱으로 간주함

- 본 고에서는 그린워싱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부적절한 라벨링’의 관점을 차용하며, 이에 따라 1) 라벨링 실시 주체와 2) 라벨링의 대상, 3)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 세 기준을 토대로 그린워싱의 세부 유형을 구분함
 - 부적절한 라벨링 활동을 이행하는 주체는 업종에 따라 금융사와 비금융사로, 라벨링의 대상 및 목적물은 상품/서비스, 채권/펀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 부적절한 라벨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의 경우, 크게 고객(customer), 투자자(investor), 주주 등 이해관계자(shareholder)로 구분됨
 - 한편, 관련 선행연구⁸⁾는 <표 1>과 같이 그린워싱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라벨링 주체, 라벨링 대상,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를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매칭될 수 있음

<표 1> 그린워싱 유형

유형	관련 연구 문헌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 (product-level greenwashing, rather than firm-level)	Delmas and Burbano, 2011 Majid and Russell, 2015 Testa et al., 2015 Cho and Baskin, 2018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selective disclosure to mislead investor)	Lyon and Maxwell, 2011 Lyon et al., 2013 Marquis et al., 2016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manipulating disclosure to boost company valuation)	Lyon and Maxwell, 2011 Lyon and Montgomery, 2013 Marquis et al., 2016

출처: 오윤진(2022) 『그린워싱과 지배구조』. KCGS Report 제12권 1호에서 재인용

<표 2> ‘부적절한 라벨링’의 관점에서 본 그린워싱 유형

주체	대상	피해자	유형
일반기업	상품/서비스	고객 (Customer)	A.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
금융기업	펀드	투자자 (Investor)	B.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채권		
공통	기업/조직	주주 등 이해관계자 (Shareholder)	C.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8) Yu, Ellen Pei-yi and Luu, B.V. and Chen, C.H. (2020) Greenwashing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s.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52

- 제품에 대한 부적절한 인증 라벨 부착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마케팅 등 상품/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그린워싱 사례는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A)’ 유형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함
 -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채권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ESG, 녹색,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그린워싱 사례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B)’ 유형에 해당함
 -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C)’ 유형은 실현 불가능한 친환경 목표를 수립하여 공개하거나,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등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등 무분별하게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거나 사업/활동에 대해 충분한 근거없이 친환경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 부적절한 라벨링의 관점에서 구분된 그린워싱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그린워싱(ESG워싱 포함)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봄⁹⁾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 A.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

- **(에니, 팜유 기반 ‘녹색’ 연료)¹⁰⁾** 이탈리아 국영석유기업 에니(Eni)는 팜유 기반 연료 ‘디젤+’을 재생가능한 녹색 연료라고 주장하며 홍보함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당국은 팜유 기반 연료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평균 5%에서 최대 40% 감소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나 근거가 없고, 팜유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간접 배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녹색’이나 ‘재생가능’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500만 유로(67억 67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광고 집행 중단 판결을 내림
- **(H&M, 컨셔스 컬렉션)¹¹⁾** H&M은 컨셔스 컬렉션(Conscious Collection)을 론칭하고, 동라인이 다른 옷 대비 물을 20%가량 적게 소비하고 화학 섬유를 덜 쓰는 제품이라고 홍보함
 - 미디어 퀴츠(Quartz)는 2022년 6월, 컨셔스 컬렉션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수(히그 인덱스, Higg Index) 데이터가 H&M 웹사이트에 잘못 표기되어 있고, 히그 인덱스가 있다고 해서

9) 최근 플래닛트래커(Planet Tracker)는 “Greebwashing Hydra” 보고서를 통해 그린워싱 유형을 1) Greencrowding, 2) Greenlighting, 3) Greenshifting, 4) Greenlabelling, 5) Greenrinsing, 6) Greenhushing, 6가지로 구분하고 그린워싱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바 있음(2023.1)

10) 임팩트온, “친환경 제품이라고 속인 그린워싱 기업은 어디?”, 2020.12.23.

11) 조선일보, “‘척만 하네’ 비난 커지자... 이젠 친환경 숨기는 기업들”, 2022.11.17.

임팩트온, “H&M, 올버즈와 바이탈팜스까지...그린워싱 소송의 새로운 흐름”, 2022.8.24.

어패럴뉴스, “패스트 패션의 ‘그린워싱’, 버랑 끝에 서다”, 2022.8.24.

의류가 더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H&M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2022년 11월), 이후 H&M은 해당 제품 라인을 매장에서 빼기 시작함
 - 원고들은 H&M의 컨셔스 컬렉션이 일반 상품과 동일한 품질인데도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제품의 지속가능성 특성을 알리는 허위 광고와 함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함
- 한편,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H&M에 ‘eco-design’ ‘conscious’와 같은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조사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H&M은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지속가능성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50만 유로(약 7억 원)를 기부할 것을 약속함¹²⁾
-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행정처분)**¹³⁾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를 조사하고,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 처분을 실시함(21.9.15)
-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18개 제품(94.7%)의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5개 제품(26.3%)은 제품 포장 등에 근거 없는 친환경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 B.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 **(홍콩 공항, 활주로 증설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¹⁴⁾ 홍콩 공항은 공항에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험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에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그린워싱 비판이 제기됨
- 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단체는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공항 옆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며, 홍콩 공항에 세 번째 활주로는 건설될 경우 소음, 대기 오염과 함께 홍콩 해양의 중국 흰돌고래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함

12) 조선일보, “세계는 ‘그린워싱’ 규제 강화… 韓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 2023.3.2.

The Business of Fashion, “H&M, Decathlon Dial Back Claims to Dodge Greenwashing Crackdown”, 2022.9.13

13) 환경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2021.9.16.

14) 임팩트온, “녹색채권 기준, 그린워싱 막으려 의무화될까?”, 2022.3.22.

- **(DWS, ESG투자 성과 과장 공시 의혹)¹⁵⁾** 도이치자산운용(이하 DWS)은 2020년 연차보고서에서 전체 운용 중인 자산 9000억 달러(한화 약 1040조 원) 중 절반 이상을 ESG 기준에 따라 투자했다고 공시함
 - 2021년 초 DWS의 지속가능성 자산이 과대포장 됐다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데지레 픽슬러(Desiree Fixler, 전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의 등장으로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BaFin)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WS 그룹의 ESG 투자 자산 과대평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픽슬러의 폭로 이후 DWS는 ESG 기준을 변경함
 - 2022년에 발행된 2021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DWS의 ESG자산은 1150억 유로(153조 원)로, 1년 전 ESG통합 자산이던 4590억 유로(613조 원)보다 75% 감소함
 - DWS CEO(아소카 뵈르만)는 동 건에 대한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22.5.31)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물러남

- **(BNY멜론, ESG펀드 관련 규제로 과징금 부과)¹⁶⁾** BNY멜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펀드 내 투자가 ESG품질 검토를 거쳤음¹⁷⁾을 밝힘
 - 해당 내용에 대해 SEC는 BNY멜론의 ESG품질 검토가 모든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든 투자'에 ESG 검토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오해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자사 펀드에 ESG 관련 규정을 왜곡 및 누락했다는 혐의로 BNY멜론을 기소하고 150만 달러(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골드만삭스, SEC로부터 ESG펀드 운용과정 조사)¹⁸⁾** 골드만삭스는 ESG 펀드의 80%를 자체 펀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주식으로 구성하며 술, 담배, 무기, 석탄, 원유, 가스 판매 등으로 수입 대부분을 얻는 기업은 배제한다고 홍보함
 - SEC¹⁹⁾는 '청정에너지', 'ESG'가 들어간 펀드를 대상으로 골드만삭스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투자가 마케팅 자료에서 약속한 ESG 지표에 위배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투자했는지 등을 조사함

15) 임팩트온, “DWS 내부고발자 데지레 픽슬러의 경고, ‘ESG를 부정행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2022.4.27.

임팩트온, “DWS 대표 사임까지... 해외 사례로 본 거세지는 그린워싱 규제”, 2022.6.2.

ESG경제, “도이치자산 뵈르만 CEO 전격 사퇴, ‘그린워싱’ 혐의 검찰 수사 영향”, 2022.6.3.

16) 임팩트온, “‘ESG 기준 사용한다’ 한 문장 적었다가... 19억원 과징금”, 2022.5.24.

환경ESG, “그린워싱에 ‘칼바람’...美 자문사 벌금 이어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도 압수수색”, 2022.6.6.

17) “Integrated into the investment process, [the Sub-Adviser] has a well-established approach to responsible investment. This process includes identifying and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isks, opportunities and issues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via [the Sub-Adviser’s] proprietary quality review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any material ESG issues are considered.”

18) 임팩트온,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예언? 골드만삭스, 왜 SEC 조사 받나”, 2022.6.14.

SEC Press Release, “SEC Charges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for Failing to Follow its Policies and Procedures Involving ESG Investments”, 2022.11.22.

19) SEC는 2021년 그린워싱 식별 전담팀을 만들고, ESG 펀드 관련 그린워싱을 집중 단속

- 조사 결과,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ESG투자 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ESG 관련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400만 달러(약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골드만삭스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과징금 납부에 동의함
- **(데카뱅크, 펀드 임팩트 계산기)²⁰⁾** 독일 데카뱅크는 ‘데카-지속가능성 임팩트펀드(Deka-Sustainability Impact Fund)’ 정보 페이지에 임팩트 계산기(impact calculator)를 삽입하고, 1만 유로 투자 시 575kg의 CO2 감소(디젤차로 3597km를 주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독일 소비자보호기관 바덴뷔르템베르크 소비자센터는 임팩트 계산기의 수치가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며 관련 증거가 부재하여 잠재 소매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데카뱅크를 고소함
- **(HSBC, 버스정류장 광고 금지 명령)²¹⁾** 2021년 10월, 영국 브리스톨과 런던의 버스정류장에 ‘HSBC 은행은 고객들이 넷제로로 전환하도록 1조 달러(약 1200조 원)를 제공할 것’, ‘125만 톤의 탄소를 가두기 위해 나무 2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두 건의 광고 포스터가 게시됨
 - 이와 관련하여 영국 광고심의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에 4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ASA측은 이를 그린워싱으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를 명령함
 - HSBC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화석연료에 투자한 자금이 1000억 달러(약 120조 원)가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에서 소비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를 누락한 채 자사의 녹색 이니셔티브만을 선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객들을 현혹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임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 C.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 **(토탈에너지스, 정유사 탄소중립 주장)²²⁾** 세계 7대 메이저 정유사 중 하나인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 배출량의 40%, 유럽 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3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함
 - 이에 환경 NGO들은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토탈 에너지스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오도해 유럽 불공정 소비

20) 임팩트온, “그린워싱과 싸워라... 덴마크 규제대응팀 꾸리고, 일본금융청 ESG펀드 라벨 규정안 마련”, 2021.3.17.

21) 임팩트온, “HSBC는 어떻게 그린워싱 예비판정을 받게 됐나”, 2022.5.2.

임팩트온, “HSBC 버스정류장 광고 금지 명령 당했다...그린워싱의 최근 흐름”, 2022.10.25.

22) 임팩트온, “토탈 에너지스, 그린워싱으로 공식 기소 위기”, 2023.2.1.

임팩트온, “또 소송...그린피스 등 4곳, 토탈 에너지스 그린워싱 법적 소송 제기”, 2023.3.10.

자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검찰은 그린워싱 혐의로 토탈에너지스를 공식 기소함

- **(드렉스, 바이오매스 연소로 탄소중립 주장)²³⁾**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드렉스 그룹은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한 후 탄소배출을 90% 줄이고, 나무를 태워 탄소중립 전기를 생산한다고 홍보함
 - 환경단체는 폐목재 연소의 경우 일반 목재에 비해 탄소를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삼림 훼손이나 벌채를 하지 않는다는 드렉스의 주장이 그린워싱이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함
 - 유럽연구의회(Europe Research Council)의 독립기구인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1차 평가한 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드렉스의 그린워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임
- **(넷제로트래커, 넷제로 목표 선언 기업 조사)²⁴⁾** 넷제로트래커(Netzero Tracker)가 포브스 2000 상장 기업 중 702개 기업의 넷제로 목표와 세부계획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만이 중간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3분의 1만이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전략을 지닌 것으로 파악됨
 - 넷제로트래커는 보고서를 통해 "포브스 2000 상장 기업 중 화석연료 기업의 절반 가량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세부 계획 없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넷제로 공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넷제로 목표로 완전히 그린워싱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금융기관, 탈석탄/넷제로 선언)²⁵⁾** 금융기관의 석유 및 가스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 선언, 넷제로 선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금융권 넷제로 선언이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
 - 셰어액션(ShareAction)은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에 가입한 유럽 주요은행 25곳이 연합 가입 이후, 신규 화석연료개발 사업에 380억 달러(46조 원)규모의 용자를 제공했음을 지적함
 - 특히 넷제로은행연합 공동창립기관인 HSBC,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도이치 은행은 연합 가입 이후 190억 달러(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업스트림 화석연료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함
 - 열대우림네트워크(RAN, Rainforest Action Network)는 기후혼돈 은행거래(Banking On Climate Chaos) 보고서를 통해 세계 상위 60대 은행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신규 투자

23) 경향신문, "영국의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그린워싱 논란?", 2022.8.1.
 임팩트온, "바이오 에너지로 탄소 90%감축? 그린워싱으로 OECD 심사받는 드렉스", 2022.8.1.
 24) 임팩트온, "넷제로 트래커 보고서, 상장기업 702곳 중 세부 목표 설정 기업은 몇곳?", 2022.6.25
 25) 임팩트온, "'유럽 넷제로은행연합 회원사 25곳, 화석연료사업 용자 중단 안했다'..셰어액션 보고서", 2022.2.16.
 임팩트온, "OGPT 추적기 출시...넷제로 선언한 금융기관 '그린워싱' 판단 가능", 2022.3.23.
 임팩트온, "은행 카드 불매운동까지...금융권, 지속가능금융 하나 안하나?", 2022.4.5.

- 사업으로 2021년에만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3조 8000억 달러(4613조 원) 이상을 투자했음을 발표함
- 글로벌 16개 비영리단체(NGOs) 연합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석유·가스 정책 추적기(OGPT, Oil and Gas Policy Tracker)를 출시함
 - OGPT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공개 약속한 150개 금융기관 중 66개 기관이 석유·가스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30대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관행을 평가하였고,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맹(GFANZ)²⁶⁾에 속한 대다수 금융사가 2020년과 2021년에 최소 7400억 달러(896조 5100억 원)를 화석연료 공급망에 조달한 것으로 집계함
- **(발레, 댐 붕괴 위험 고의적 은폐 혐의)²⁷⁾** 2019년 1월 브라질의 광산업체 발레(Vale SA)가 보유한 댐이 붕괴되었고, 동 사고로 댐이 위치한 브루마디뉴(Brumadinho) 마을 식당과 인근 지역이 파괴되고 270명이 숨졌으며 유독성 광산 폐기물이 다량 유출됨
- SEC는 발레가 댐 안전기준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댐의 안전검사를 조작하고 허위 안전성 증명서를 취득했으며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ESG 공시를 조작해 지자체, 지역사회,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및 보고 조항 위반혐의로 발레를 고소함
- **(AEPW, 이니셔티브 그린워싱 논란)²⁸⁾**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연합(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이하 AEPW)은 2019년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15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플래닛트래커(Planet Tracker)는 AEPW가 '정교한' 형태의 그린워싱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AEPW 회원사 대부분이 미국에서 플라스틱세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플라스틱 관련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ACC(미국화학협회) 소속으로, 회원사의 90%가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합의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 2021년 기준,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제거된 플라스틱은 3만4000톤으로 3년간 목표의 0.2%만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AEPW가 수립한 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26) 전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가 결성한 네트워크로, HSBC, 아비바,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도이체뱅크 등 45개국 450개 은행, 보험사, 금융기관들이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총 자산의 40%를 차지

27) 임팩트온, "엑손모빌, 발레(Vale)까지... 그린워싱 손보는 미국", 2022.5.2.

임팩트온, "DWS 대표 사임까지... 해외 사례로 본 거세지는 그린워싱 규제", 2022.6.2.

28) 임팩트온,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연합(AEPW)의 '정밀한 그린워싱' 혐의 저격", 2022.9.7.

임팩트온,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연합(AEPW)을 둘러싼 의혹 팩트체크", 2022.12.29.

〈표 3〉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요약)

유형 [라벨링 대상]	일반	금융
A.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혐의의 그린워싱 [상품/서비스]	(에니) 팜유 기반 '녹색' 연료 (H&M) 컨서스 컬렉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행정처분	-
B.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펀드/채권]	(홍콩 공항) 활주로 증설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DWS) ESG투자 성과 과장 공시 의혹 (BNY멜론) ESG펀드 관련 규제과 과징금 부과 (골드만삭스) SEC, ESG펀드 운용과정 조사 (데카뱅크) 펀드 임팩트 계산기 (HSBC) 버스정류장 광고 금지 명령
C.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기업/조직]	(토탈에너지스) 정유사 탄소중립 주장 (드랙스) 바이오매스 연소로 탄소중립 주장 (넷제로트래커) 넷제로 목표 선언 기업 조사 (발레) 댄 붕괴 위험 고의적 은폐 혐의 (AEPW) 이니셔티브 그린워싱 논란	(금융기관) 탈석탄/넷제로 선언

결론

- 그린워싱의 개념이나 그린워싱을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에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으로 지칭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상품에 대한 친환경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ESG펀드/채권 발행 등 실제로는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전반에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 용어가 사용되며 그린워싱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모호해짐
- 그린워싱의 본질은 결국 '부적절한 라벨링'으로 라벨링을 실시하는 주체와 목적물에 따라 그린워싱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됨
 - (혐의의 그린워싱)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고객이 피해당사자가 됨
 - 팜유 기반 오일에 '녹색'을 붙인 에니, 새롭게 런칭한 컬렉션을 친환경이라며 홍보한 H&M, 제품의 특성이 친환경, 무독성이라며 홍보한 어린이 목욕완구 문구류 제조·유통·납품사 등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관행에 대하여 시장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그린워싱을 판별하고 있음
 - 아울러 바이오 연료, LNG 등 친환경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의 경우, 그린워싱 낙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친환경 마케팅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함
 -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금융투자 상품 혹은 채권 관련하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ESG,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금융상품 및 채권에 대한 부적절한 라벨링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에게 발생함

- 기업은 ESG채권,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채권 발행이 곧 발행 주체 또는 프로젝트의 친환경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ESG, 녹색으로 라벨링 된 채권에 대한 시장의 감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한편, ESG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금융기관이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녹색’, ‘친환경’, ‘ESG’를 붙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음

-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그린워싱으로 인한 부적절한 라벨링의 대상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친환경 기업 또는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기업 가치가 부풀려져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세부 목표나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 혹은 넷제로를 선언하거나,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기업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린워싱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

ESG 동향

국내 기업의 업종별 ESG 중대성 이슈 현황 (1)* - 에너지, 식품 및 음료, 은행,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 중대성(Materiality)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여 주요 ESG리스크를 식별함
- ▶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ESG 중대성 이슈를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주요 중대성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
- ▶ 국내 기업들은 사회 이슈를 중대성 이슈로 가장 많이 선정하였으나, 환경 이슈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론: 검토배경

• 중대성 평가의 중요도 증가

-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¹⁾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한 ESG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함
- 지난 몇 년 동안²⁾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ESG 지표 및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비재무적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부상하였음
- 현재 글로벌 상위 250개 기업(G250) 중 대다수 기업(96%)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75%의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본고는 파트 1과 2로 나누어 발간되며 파트 2에는 은행,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분석 및 전체 결론이 실릴 예정입니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박나온 선임연구원(파트장), naon@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박지영 연구원, jy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박준성 연구원, js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김희경 연구원, hk.kim@cgs.or.kr

1) Materiality를 '중요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중대성'으로 통일하였음

2) ESG경제, 2021.07.20., "글로벌 기업들, 기업설명회에서 ESG 언급 급증"

3) KPMG, 2022, "KPMG'S 2022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https://owlesg.com/2022/11/03/kpmgs-2022-survey-of-sustainability-reporting/>

- 국내에서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진행 단계에 있는 만큼, 현재 많은 기업이 ESG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거나 발간을 앞두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 공개하는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음
-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요한 ESG 이슈를 식별할 수 있으며, 해당 이슈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또한, 중대성 평가는 조직의 ESG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편, 기업 대다수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중대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중대성 평가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성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대성의 개념 및 중대성 평가 절차

- GRI, SASB 등 ESG 보고와 관련된 주요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중대성’ 개념을 도입 및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다르게 기술하고 있음
 - GRI는 중대성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람에 미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는 주제”라고 설명함⁴⁾
 - SASB는 중대성을 “장기적 기업 가치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요소”로 정의함⁵⁾
 - 한편,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안을 마련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수용함에 따라 EU 및 GRI에서 주장한 ‘이중 중대성’⁶⁾ 개념은 배제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관한 재무정보”만을 중대성으로 정의함⁷⁾
- GRI 공시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중대성 이슈를 결정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그림 1〉참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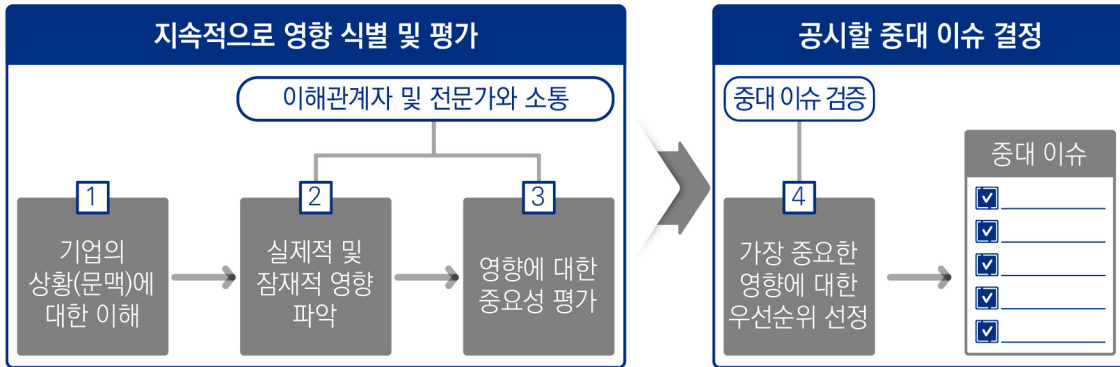
4) GRI, 2022, “GRI 3: Material Topics 2021”

5) SASB, <https://www.sasb.org/company-use/>

6)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과 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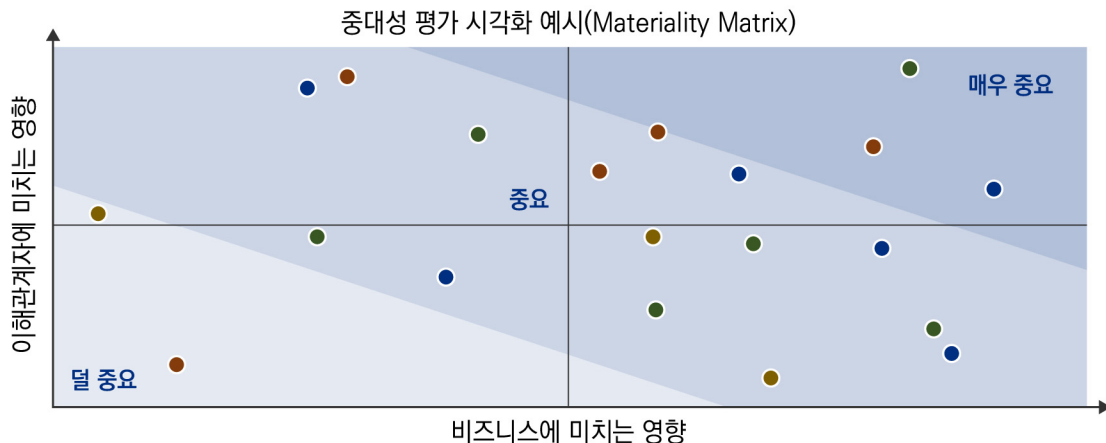
7) IFRS, 2022,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그림 1〉 GRI 중대성 이슈 결정 절차



- 첫째, 기업은 기업의 상황 또는 맥락을 이해해야 함. 구체적으로 기업은 소수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기업이 통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의 활동, 비즈니스 관계,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함
- 둘째, 기업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을 파악해야 함. 이 단계에서 기업은 기업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친 영향을 식별하는데, 이러한 영향에는 ①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②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 ③ 의도한 영향과 의도하지 않은 영향, 그리고 ④ 돌이킬 수 있는 영향과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포함됨
- 셋째, 기업은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영향들의 중대성을 평가해야 함.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이 포함되며, 기업마다 각 영향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
- 넷째, 기업은 중대성 이슈를 도출해야 함. 가장 중대한 영향부터 가장 덜 중대한 영향까지 정렬하고 임계값을 설정하여 중대성 이슈 간 우선순위를 문서화 또는 시각화하여 공개해야 함(〈그림 2〉 참고)

〈그림 2〉 이중 중대성 매트릭스(Materiality Matrix)



- 국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핵심 중대성 이슈를 결정하고 있으며,⁸⁾ 중대성 평가 수행 기업 중 15.4%는 이중 중대성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됨⁹⁾

• 소결

-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황, 새로운 경영 목표 및 향후 개선점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의 선택 및 결정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중대성 현황을 살펴보고, **업종별 분석**을 실시함. 더 나아가 산업별 ESG 이슈를 공시하도록 안내하는 SASB의 산업별 지속가능회계기준을 국내 기업들의 중대성 이슈와 함께 비교하여 **업종별 중대성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본론 1: 분석방법

• 분석대상

- 2022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대상¹⁰⁾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ESG 중대성 평가결과를 공개한 190개사의 ESG 중대성 이슈를 분석함
- 190개사가 2022년 ESG 중대성 평가결과를 거쳐 도출한 중대성 이슈는 총 2,176개였으며, 본 고에서는 이 중 1,804개의 ESG 중대성 이슈를 분석대상으로 함
 - 분석대상 ESG 중대성 이슈는 각 기업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선정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며, 11위 이상의 순위를 기록한 이슈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제외함
 - 190개사 분석대상의 약 78%에 해당하는 148개 기업이 1~10위의 중대성 이슈를 공개하였으며, 10위 미만으로¹¹⁾ 중대성 이슈를 도출한 기업은 약 22% 정도를 차지함

• 업종 분류

- 업종별 ESG 중대성 이슈 분석 시 분석대상 기업의 업종 분류는 WICS(Wise Sector Classification)¹²⁾ 분류체계를 참고함¹³⁾

8)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ESG Handbook", <https://svhub.co.kr/esghandbook/sub03.html>

9) 임팩트온, 2023.01.06., "국내 200대 기업 공시 현황 살펴보니...스코프3 공시율 35%"

10) 2022년 한국ESG기준원 평가대상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 바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2.04.29., "2022년 ESG 평가대상기업 안내", http://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2&no=195

11) 기업별로 각각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까지 중대성 이슈를 도출한 경우

12) WIC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업종 분류체계임

13) 사업보고서상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을 구성하는 사업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해당 기업의 섹터로 1차 분류하며, 사업설명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유사 업종에 관련된 기업 리스트와 비교하여 2차 검증함. FN가이드, 2022.4, "Index Methodology Book - WICS 섹터 지수", p.3

- WICS 분류는 10개 대분류, 28개의 중분류, 7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며, 분석대상(190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 대분류 기준, 산업재, 금융, 경기관련소비재 순으로 속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 가정용품과개인용품, 부동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음(〈표 1〉 참고)

〈표 1〉 분석대상 190개사의 WICS 업종 분류

대분류(기업수)		중분류		기업수
10	에너지(4)	1010	에너지	4
15	소재(26)	1510	소재	26
20	산업재(50)	2010	자본재	40
		2020	상업서비스와공급품	2
		2030	운송	8
25	경기관련소비재(26)	2510	자동차와부품	13
		2520	내구소비재와의류	5
		2530	호텔, 레스토랑, 레저 등	1
		2550	소매(유통)	7
		2560	교육서비스	0
30	필수소비재(10)	3010	식품과기본식품소매	1
		3020	식품,음료,담배	9
		3030	가정용품과개인용품	0
35	건강관리(12)	3510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1
		3520	제약과생물공학	11
40	금융(27)	4010	은행	9
		4020	증권	9
		4030	다각화된금융	1
		4040	보험	8
		4050	부동산	0
45	IT(17)	4510	소프트웨어와서비스	4
		4520	기술하드웨어와장비	5
		4530	반도체와반도체장비	4
		4535	전자와전기제품	2
		4540	디스플레이	2
5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2)	5010	전기통신서비스	3
		5020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9
55	유틸리티(6)	5510	유틸리티	6

- 10개의 대분류 중 ① 속한 기업들의 특성의 유사성이 높으면서 ② ESG 중대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필수소비재, 금융, IT 4개 분류를 선정함. 이 중 대표 중분류 업종인 에너지(1010), 식품·음료(3020), 은행(4010), 소프트웨어와서비스(4510)의 중대성 이슈 및 특성에 대해 살펴봄(본론3)

• ESG 중대성 이슈 분류

- 기업의 ESG 중대성 이슈를 성격에 따라 36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세부 지표로 분류함(〈표 2〉 참고)
- 36개의 ‘ESG 중대성 지표’는 한국ESG기준원의 모범규준 기반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환경 9개, 사회 18개, 지배구조 9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환경(E)의 ‘기후변화’ 지표에 해당하며, ‘공급망 ESG관리’는 사회(S)의 ‘공급망 위험관리’에 해당함

〈표 2〉 ESG 중대성 지표

환경(E)	환경경영	사회(S)	경제적 성과 창출
	위험관리		차별없는 고용(인재유치, 관리)
	기후변화		차별없는 고용(다양성)
	자원순환		차별없는 고용(성과평가)
	물/토양/생물다양성		근로자 역량 지원
	오염/화학물질		일과 생활 균형
	친환경 공급망		건전한 노사관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안전보건 위험관리
	환경정보공개		인권경영 거버넌스
지배구조(G)	이사회		동반성장 기반확립
	주주가치		공급망 위험관리
	리스크		공정거래 거버넌스
	투명성		정보보호 거버넌스
	내부회계/내부통제		소비자 권익 보호 거버넌스
	지배구조(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
	윤리경영(부패방지)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고객만족)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
	ESG경영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분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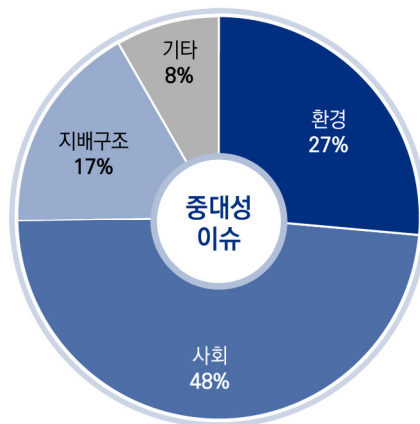
- 기업의 중대성 이슈를 ‘ESG 중대성 지표’에 따라 분류한 후 업종별 중대성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분석 지표를 사용함
- 업종별로 먼저 총 가중치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중대성 이슈를 도출한 후, 해당 이슈의 빈출 정도, 평균순위, 평균 가중치점수를 계산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음
 - (총 가중치점수) 각 기업의 중대성 평가로 도출된 중대성 이슈를 순위가 높은 순으로 1~10점의 가중치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함. 예를 들어 1위는 10점, 10위는 1점을 부여하여 해당 업종에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함
 - (빈도) 해당 이슈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 빈출 정도를 측정함

- (평균순위) 업종 내 기업에서 해당 지표에 대해 부여한 중대성 순위를 평균하여 산출함
- (평균 가중치점수) 가중치점수를 빈도로 나누어, 해당 지표의 평균적인 가중치점수를 산출함

본론 2: 전체 기업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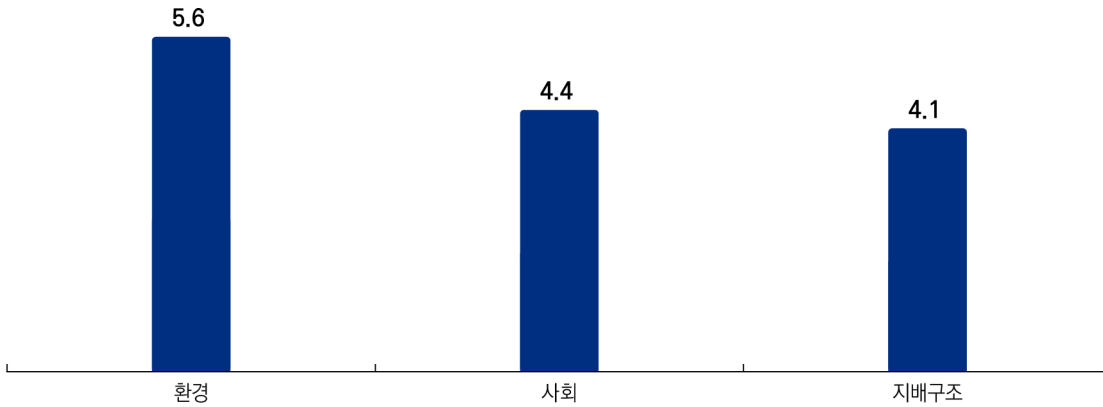
- 190개사 전체를 분석한 결과, 사회 이슈를 중대성 이슈로 선정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총 1,804개의 중대성 이슈 중 절반에 가까운 874건이 사회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사회-환경-지배구조 순)(그림 3) 참고)
 - ESG 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는 이슈도 총 5건 포함됨
 -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은 2건 확인되었으며 환경(E)과 사회(G) 모두에 포함시킴
 - ‘윤리·준법경영 추진 및 공정거래 준수’ 이슈는 3건 확인되었으며 사회(S) 분야 이슈이자 지배구조(G) 이슈로 분류하였음
 - ESG 전 분야에 걸친 146개의 중대성 이슈는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R&D, 신사업 개척 및 사업다각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이 포함되었음

〈그림 3〉 ESG 분야별 중요도(빈도)



- 가중치(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빈도로 나눈 평균 가중치점수에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됨(환경-사회-지배구조순). 즉, 많은 대상기업이 중대성 이슈 중 환경 이슈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파악됨(그림 4) 참고)

〈그림 4〉 ESG 분야별 중요도(평균 가중치점수 기준)



- 전체 중대성 이슈를 ‘ESG 중대성 지표’에 따라 분류한 후, 총 가중치점수 순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 상위 5개 이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표 3〉 참고)
 - (총 가중치점수) 중대성 지표의 순위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 가중치점수를 살펴보면 기후변화(E)가 1,261점, 안전보건 위험관리(S)가 1,062점, 윤리경영(부패방지)(G)이 594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E)가 588점, 오염/화학물질(E)이 513점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된 중대성 지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188건으로 기후변화(E)였으며, 안전보건 위험관리(S)가 156건, 윤리경영(부패방지)(G)이 116건, 오염/화학물질(E)이 96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E)가 89건으로 뒤를 이음
 - 특히 환경(E) 부문은 상위 5개 중대성 이슈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문은 각 1개씩 분포함
 - (평균 가중치점수) 반면, 해당 지표의 평균 가중치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전보건 위험관리(S)가 6.81점으로, 언급된 빈도 대비 가중치를 가장 높게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 2022년 상위 5개 중대성 이슈

순위	분야	중대성 이슈	총 가중치점수 (점)	빈도 (건)	평균 가중치 점수 (점)
1	E	기후변화	1,261	188	6.71
2	S	안전보건 위험관리	1,062	156	6.81
3	G	윤리경영(부패방지)	594	116	5.12
4	E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588	89	6.61
5	E	오염/화학물질	513	96	5.44

본론3: 업종별 분석

1) 에너지

• 에너지 업종 분석 개요

- 업종 분류: 에너지(WICS 1010)
- 분석 대상기업 총 4개사: 현대에너지솔루션, S-Oil, SGC에너지, SK이노베이션

• 에너지 업종 ESG 이슈

- 2021년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이 필요함¹⁴⁾
 - 이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석탄, LNG) 발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함. 발전원별로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이 완전 중단되고, LNG발전은 완전 중단(A안) 또는 유연성 전원 활용 등을 위해 일부 사용(B안) 등을 선택적 대안으로 상정함
 - 화력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2050년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될 전망이고, 지금은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전력망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소터빈과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 기반 발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임
 - 석유화학산업에서 상공정은 주원료인 납사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 직접 배출(Scope 1) 비중이 높고, 하공정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 간접 배출(Scope 2) 비중이 높음. 따라서 전기가 열로 도입 등 연료전환과 바이오 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 원료전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음
- 대규모 설비 운영과 유독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됨¹⁵⁾
 -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와 더불어 끼임·추락·충돌 등 '재래형 사망사고¹⁶⁾'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으로 2021년 기준 5년간 14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끼임, 추락 등 재래형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14)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10.18.)

15)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9.17.)

16) '재래(在來)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기초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아직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사고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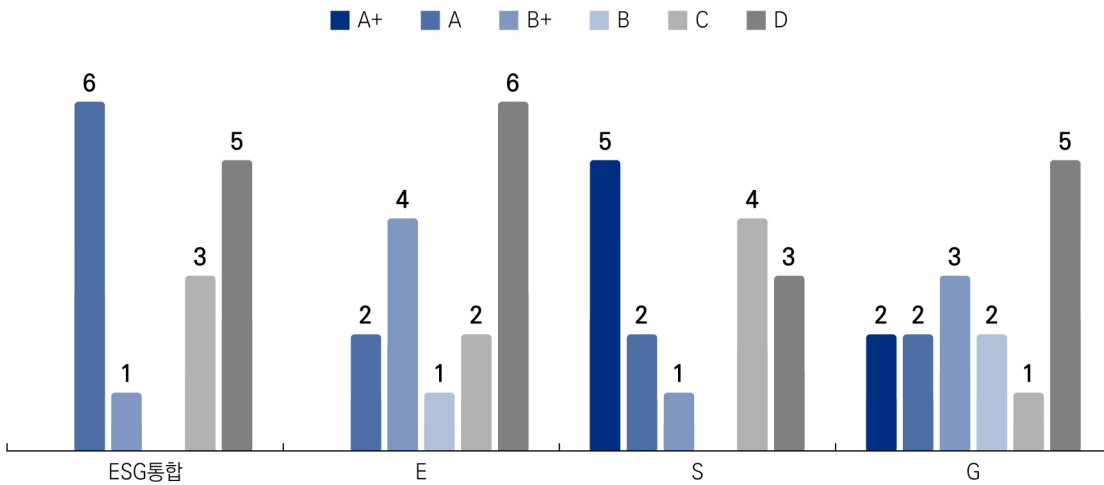
• 에너지 업종 내 ESG등급 분포

- 한국ESG기준원 2022년 ESG 평가에서 에너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15개사임(〈표 4〉 참고)
- ESG통합등급을 기준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으며, A등급 6개사, B+등급 1개사, C등급 3개사, D등급 5개사로 분포되어 기업별 ESG 관리 수준이 다소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배구조(G) 부문은 모든 등급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에 반해, 환경(E) 부문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사회(S) 부문은 양극화되어 있어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등급 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2022년 에너지 업종 ESG 평가등급 분포

등급	ESG 통합	비율(%)	E	비율(%)	S	비율(%)	G	비율(%)
A+	0	0	0	0	5	33.3	2	13.3
A	6	40	2	13.3	2	13.3	2	13.3
B+	1	6.7	4	26.7	1	6.7	3	20
B	0	0	1	6.7	0	0	2	13.3
C	3	20	2	13.3	4	26.7	1	6.7
D	5	33.3	6	40	3	20	5	33.3
계	15	100	15	100	15	100	15	100

〈그림 5〉 2022년 에너지 업종 ESG 평가등급 분포



• ESG 분야별 중요도

- ESG 각 분야별로 총 가중치점수, 빈도, 평균 가중치점수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점수 및 평균 가중치점수 기준으로 환경(E) 부문이 각각 127점, 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빈도를 고려할 경우 사회(S) 부문이 24건으로 가장 높음(〈표 5〉 참고)

〈표 5〉 에너지 업종 ESG 분야별 중요도

분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총 가중치점수	127점	94점	21점
빈도	13건	24건	4건
평균 가중치점수	9.8점	3.9점	5.3점

- 총 가중치점수 기준으로는 환경(E) 부문이 127점, 빈도 기준으로는 사회(S) 부문이 2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가중치점수를 고려할 경우 환경(E) 부문이 9.8점으로 가장 높고 지배구조(G) 부문이 5.3점으로 뒤를 이음
- 사회(S) 부문은 기업의 중대성 이슈 순위 내에 다수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단지 4건의 중대성 이슈가 선정된 것과 비교할 때 낮은 평균 가중치점수를 보임

• 상위 5개 ESG 중대성 이슈

- 에너지 업종 내 총 가중치점수가 높은 순으로 'ESG 중대성 이슈 지표'에 따라 상위 5개 이슈를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음(〈표 6〉 참고)

〈표 6〉 에너지 업종 상위 5개 중대성 이슈

(총 가중치점수 높은 순)

분류	E	S	E	S	E
	기후변화	안전보건 위험관리	오염/화학 물질	공급망 위험관리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세부내용	기후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관리	오염물질 및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관리	친환경 사업 및 투자 확대
총 가중치점수	44점	27점	25점	21점	19점
빈도	5건	6건	4건	4건	2건
평균순위	2.2위	6.5위	3.8위	5.8위	1.5위
평균 가중치점수	8.8점	4.5점	6.3점	5.3점	9.5점

- (총 가중치점수) 중대성 평가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한 '총 가중치점수'를 분석한

- 결과, (E)기후변화 44점, (S)안전보건 위험관리 27점, (E)오염/화학 물질 25점, (S)공급망 위험관리 21점, (E)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19점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빈도) 4개 기업이 선정한 중대성 평가 항목을 빈도로 나타내면 (S)안전보건 위험관리 6건, (E)기후변화 5건, (E)오염/화학 물질 4건, (S)공급망 위험관리 4건, (E)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2건 순으로 총 가중치점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에너지 업종 내 4개 기업 모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이슈를 제외한 상위 4개 이슈를 중대한 이슈로 꼽았음
- (평균순위) 각 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항목을 평균순위로 분석한 결과, (E)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1.5위, (E)기후변화 2.2위, (E)오염/화학 물질 3.8위, (S)공급망 위험관리 5.8위, (S)안전보건 위험관리 6.5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가중치점수 순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임
- (평균 가중치점수) 총 가중치점수를 빈도로 나눈 ‘평균 가중치점수’를 살펴보면, (E)친환경제품 및 서비스가 9.5로 가장 높았으며 (E)기후변화, (E)오염/화학 물질, (S)공급망 관리, (S)안전보건 위험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가중치점수 합계 및 빈도의 순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임

•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

- 총 가중치점수를 기준으로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를 도출한 결과, 환경(E)은 변동없으나 사회(S)에서는 공정거래 거버넌스, 지배구조(G)에서는 윤리경영(부패방지),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이사회 등 협의의 개념) 이슈가 추가됨(〈표 7〉 참고)

〈표 7〉 에너지 업종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

(총 가중치점수 높은 순)

분류	E			S			G		
	기후변화	오염/화학 물질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안전보건 위험관리	공급망 위험관리	공정거래 거버넌스	윤리경영 (부패방지)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거버넌스)
총 가중치점수 (점)	44	25	19	27	21	9	10	10	1
빈도 (건)	5	4	2	6	4	3	2	1	1
평균 가중치 점수 (점)	8.8	6.3	9.5	4.5	5.3	3	5	10	1

- (환경) 기후변화대응, 오염/화학물질 관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사회) 안전보건위험 관리, 공급망 관리, 공정거래 거버넌스가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배구조가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회계기준 비교 분석

- SASB의 지속가능성 산업 분류체계(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ICS)에 따라 에너지 산업을 전력 및 발전(Infrastructure)또는 석유 및 가스(Extractives & Minerals Processing)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SASB는 전력 및 발전 산업이 천연가스 공급이 아닌 전력 공급과 관련된 활동만을 다루며, 천연가스 조달 및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전력기업은 별도의 가스 및 유통산업 기준 (Gas Utilities & Distributors Industry Standard; IF-GU)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WICS에 따른 전력 및 석유·가스 산업의 지속가능성회계기준과 분석 대상기업에서 도출한 중대성 이슈를 비교·분석한 결과, 에너지 접근성과 가격 투명성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 대해 1개 기업 이상에서 중대성 이슈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남(〈표 8〉 참고)
 - SASB는 에너지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물 사용 및 폐수 배출, 오염 폐기물 발생 등의 위험이 있으며, 기반 시설 운영 등의 과정에서 종업원의 보건 및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앞서 분석 대상기업 4개사의 경우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관리,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위험 관리 등의 주요 지표들을 중점 평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접근성과 가격 투명성의 요소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SASB 전력 및 석유·가스 산업 지속가능성회계기준¹⁷⁾¹⁸⁾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중대성평가 검토 여부
Infrastructure	Electric Utilities & Power Generators (에너지장비및서비스 / 전기·복합유틸리티)	Greenhouse Gas Emissions & Energy Resource Planning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계획)	○
		Air Quality (대기 오염)	○
		Water Management (수자원 관리)	○
		Coal Ash Management (석탄재 관리)	-
		Energy Affordability (에너지 접근성)	X
		Workforce Health & Safety (산업안전보건)	○

17) SASB, 2018. 10,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 Infrastructure, Extractives & Minerals Processing"

18) 분석대상 에너지 업종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슈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중대성평가 검토 여부
Extractives & Minerals Processing		End-Use Efficiency & Demand (에너지 효율성)	O
		Nuclear Safety & Emergency Management (원자력 안전 및 비상관리)	-
		Grid Resiliency (그리드 복원력)	-
	Oil & Gas - Refining & Marketing (석유와가스)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	O
		Air Quality (대기 오염)	O
		Water Management (수자원 관리)	O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유해물질 관리)	O
		Workforce Health & Safety (산업안전보건)	O
		Product Specifications & Clean Fuel Blends (제품 사양 및 청정 연료 혼합)	O
		Pricing Integrity & Transparency (가격 투명성)	X
Management of the Legal & Regulatory Environment (법률 및 규제환경 관리)	O		
	Critical Incident Risk Management (치명적 사고 위험관리)	O	

2) 식품 및 음료

• 식품 및 음료 업종 분석 개요

- 업종 분류: 식품(WICS 302020)·음료(WICS 3020010)
- 분석 대상기업 총 8개사: 농심, 대상, 동원산업, 동원F&B, 삼양사, 풀무원, CJ제일제당(이상 식품 업종), 롯데칠성음료(음료 업종)

• 식품 및 음료 업종 ESG 이슈

- 식품 및 음료 업종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종인 만큼, 소비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촉발하여 기업가치의 하락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¹⁹⁾²⁰⁾ 사회(S)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

19) 파이낸셜뉴스, 2022.10.27., “불매 직격탄’ 속타는 SPC 가맹점… 대학가 매출 30% 줄었다”

20) 매일경제, 2021.09.09., “‘이제 곧 반토막날 판’…추락하는 남양유업 주가, 부글부글 투자자”

능성의 척도가 됨

- 전통적으로 식음료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유통·판매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제품 안전성’ 및 ‘고객 건강’과 같은 사회(S) 이슈 관리가 중요함
- 이와 더불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관리’ 및 ‘사업장 안전’ 또한 중대성 이슈로 부각됨
-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로 ‘원재료 공급망 관리’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환경(E)과 관련하여 ‘포장재 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이 중대성 이슈로 파악됨
 - 2022년 한국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3%는 식품 포장재로 조사됨²¹⁾
 -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포장재 사용의 증가와 2022년 환경부의 폐플라스틱 20% 감축 정책 발표²²⁾로 식품업계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²³⁾

• 식품 및 음료 업종 내 ESG 등급 분포

- 한국ESG기준원 2022년 ESG 평가에서 식품 및 음료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57개사임 (식품: 51개사, 음료: 6개사)(〈표 9〉 참고)
 - ESG통합등급을 기준으로 식품·음료 업종 기업 중 A+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으며, ESG 관리체계 및 위험 수준이 ‘양호’ 또는 ‘우수’에 해당하는 B+ 이상 기업은 전체 24.5%를 차지함
 - 식품·음료 업종 기업 중 지배구조(G) 양호군(B+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14%에 불과해 지배구조 수준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S) 양호군은 57개사 중 절반이 넘는 27개사였음

21) 그린피스, 2022,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 p.8

22) 환경부, 2022.10.20.,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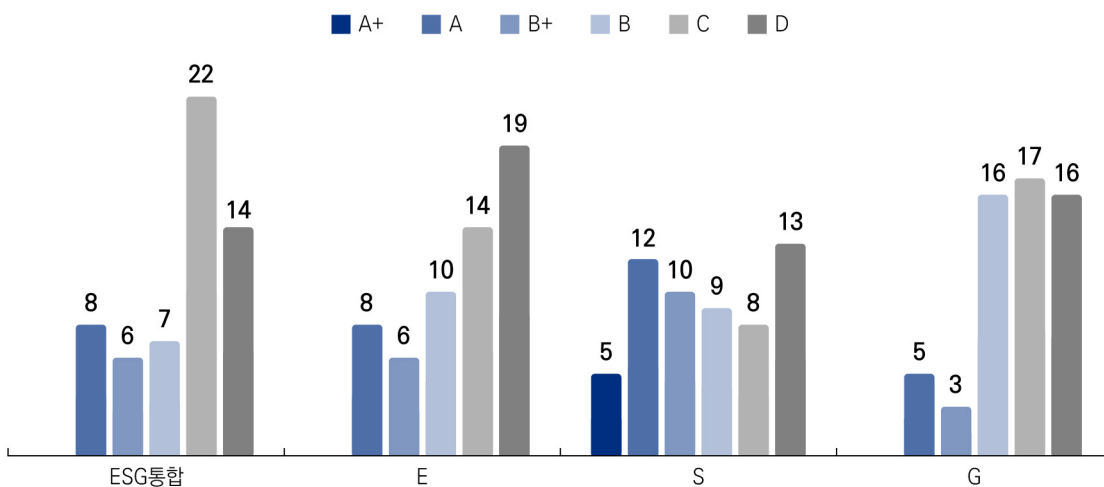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556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3) 식품음료신문, 2022.12.15., “식품업계,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사용 확대”

〈표 9〉 2022년 식품·음료 업종 ESG 평가등급 분포

등급	ESG 통합	비율(%)	E	비율(%)	S	비율(%)	G	비율(%)
A+	0	0	0	0	5	8.8	0	0
A	8	14	8	14	12	21.1	5	8.8
B+	6	10.5	6	10.5	10	17.5	3	5.3
B	7	12.3	10	17.5	9	15.8	16	28.1
C	22	38.6	14	24.6	8	14	17	29.8
D	14	24.6	19	33.3	13	22.8	16	28.1
계	57	100	57	100	57	100	57	100

〈그림 6〉 2022년 식품·음료 업종 ESG 평가등급 분포



• ESG 분야별 중요도

□ ESG 각 분야별로 총 가중치점수, 빈도, 평균 가중치점수를 분석한 결과, 총 가중치점수 및 빈도 기준으로 사회(S) 부문이 각각 186점, 3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가중치점수를 고려할 경우 환경(E) 부문이 7.4점으로 가장 높고 지배구조(G) 부문이 5.7점으로 뒤를 이었음(〈표 10〉 참고)

〈표 10〉 식품·음료 업종 ESG 분야별 중요도

분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총 가중치점수	96점	186점	80점
빈도	13건	35건	14건
평균 가중치점수	7.4점	5.3점	5.7점

○ 식품·음료 업종에서 사회(S) 부문은 기업의 중대성 이슈 순위 내에 환경, 지배구조 대비 약 2.5배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됨. 지배구조(G) 부문의 빈도가 14건인데 비해 사회(S) 부문은 35건으로 3배 이상 많았으나, 평균 가중치점수는 사회(S) 부문이 더 낮게 나타남

• 상위 5개 ESG 중대성 이슈

□ 식품·음료 업종 내 총 가중치점수가 높은 순으로 'ESG 중대성 지표'에 따라 상위 5개 이슈를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았음(〈표 11〉 참고)

〈표 11〉 식품·음료 업종 상위 5개 중대성 이슈

(총 가중치점수 높은 순)

분류	S	S	S	E	G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 (제품안전)	공급망 위험관리	안전보건 위험관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윤리경영 (부패방지)
세부내용	제품 품질 및 안전, 고객 건강 및 영양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친환경 패키징	준법 및 윤리경영
총 가중치점수	63점	32점	29점	26점	23점
빈도	9건	7건	5건	4건	6건
평균순위	4위	6.4위	5.2위	2.5위	7.2위
평균 가중치점수	7점	4.6점	5.8점	6.5점	3.8점

○ (총 가중치점수) 중대성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한 '총 가중치점수'를 분석한 결과, (S)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이 63점으로 가장 중대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S)공급망 위험관리 32점, (S)안전보건 위험관리 29점, (E)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26점, (G)윤리경영(부패방지) 23점 순으로 나타남

- 상위 3개 이슈가 모두 사회(S) 이슈인 것으로 조사되어 식품·음료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회(S)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빈도) 8개의 기업이 선택한 중대성 평가 항목을 빈도로 나타내면 (S)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 9건, (S)공급망 위험관리 7건, (G)윤리경영(부패방지) 6건, (S)안전보건 위험관리 5건, (E)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4건 순으로 총 가중치점수 순과 다소 차이가 있음

- 식품·음료 업종 내 8개 기업 모두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을 중대성 이슈로 꼽았으며, 삼양사의 경우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고객 건강 및 영양' 두 개의 제품안전 이슈를 꼽았음

- (평균순위) 8개의 기업이 선택한 중대성 평가 항목을 평균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E)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2.5위, (S)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 4위, (S)안전보건 위험관리 5.2위, (S)공급망 위험관리 6.4위, (G)윤리경영(부패방지) 7.2위 순으로 나타남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중대성 이슈로 꼽은 대상, 농심, CJ제일제당 3개사의 중대성 순위는 각각 1, 3, 4위로,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해당 주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평균 가중치점수) 평균 가중치점수 지표에서는 역시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안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윤리경영(G) 이슈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식품·음료 업종에서 또한 환경, 사회 이슈에 비해 지배구조 이슈의 상대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

- 총 가중치점수를 기준으로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를 도출한 결과, 환경(E)에서는 환경경영, 오염/화학물질 이슈가 추가되었고, 지배구조(G)에서는 이사회,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이슈가 추가됨(〈표 12〉 참고)

〈표 12〉 식품·음료 업종 ESG 분야별 상위 3개 중대성 이슈

(총 가중치점수 높은 순)

분류	E			S			G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환경경영	오염 /화학 물질	지속가능한 소비진작 (제품안전)	공급망 위험관리	안전보건 위험관리	윤리경영 (부패방지)	이사회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총 가중치점수 (점)	25	20	15	63	32	29	23	18	15
빈도 (건)	3	2	2	9	7	5	6	2	3
평균 가중치 점수 (점)	8.3	10	7.5	7	4.6	5.8	3.8	9	5

- (환경)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환경경영, 오염/화학물질이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진작(제품안전),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위험관리가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지배구조) 윤리경영(부패방지), 이사회,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가 상위 3개 중대성 이슈로 선정되었음

•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회계기준 비교 분석

- SASB는 식음료(Food & Beverage) 산업을 식품 소매 및 유통, 가공식품, 음료(Non-Alcoholic Beverages) 3개 산업으로 분류함
 - 이 중 식음료 업종 8개사에 해당하는 가공식품 및 음료 산업 공시 기준에 대해 분석함
 - SASB에 따르면 식음료 산업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원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복잡한 원료 공급망이 특징임²⁴⁾
- 분석대상 식음료 산업 8개사의 경우 SASB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지표 중운송수단 연료 효율성 관리와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제에 대해 1개 기업 이상 중대성 이슈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3〉 참고)
 - 음료 산업만 공시해야 하는 주제로 분류된 운송수단 연료 효율성 관리와 가공식품만의 공시 주제에 해당하는 식품 안전을 제외하고 다른 주제는 모두 교집합에 해당함
 - 앞서 분석대상 식음료 업종 기업이 공급망 위험관리,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제품 안전), 친환경 포장재를 주요 중대성 이슈로 도출한 것과 같이, SASB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항목이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13〉 SASB 음료 및 가공식품 산업 지속가능성회계기준²⁵⁾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중대성평가 검토 여부
Food & Beverage (식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음료) 및 Processed Foods (가공식품)	Fleet Fuel Management (운송수단 연료 효율성 관리)	X
		Energy Management (에너지 관리)	O
		Water Management (수자원 관리)	O
		Food Safety (식품 안전)	O
		Health & Nutrition (건강 및 영양)	O
		Product Labeling & Marketing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	X
		Packaging Lifecycle Management (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O
		Environment & Social Impacts of Ingredient Supply Chain (원료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O
		Ingredient Sourcing (원료 조달)	O

24) 한국회계기준원, 2022.12,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식음료 부문 가공식품”, 한국회계기준원 번역

25) SASB, 2018. 10,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 Food & Beverage”

1. EU 의회,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지침안 의결

박수빈*

- EU 의회는 지난 2월 2일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지침안(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¹⁾)을 의결함
 -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입법지침안 작성에 앞서 2021년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플랫폼 기업,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함
 -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9일 최초로 입법지침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후 EU 의회 및 이사회 내에서의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2023년 2월 2일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음
- 동 입법지침안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한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법지침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권역 내 500개가 넘는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며, 2,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10개 중 9개는 플랫폼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이러한 분류체계로 인해 그간 플랫폼 종사자들은 단체교섭권, 산업안전 보호, 유급휴가, 임금 보장 등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로 소외되어옴
 - 특히,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지침안을 발의함
- 입법지침안은 플랫폼 종사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입법지침안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이들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아래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moana@cgs.or.kr

1) 조직 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조직 또는 개인과 연결되어 지불을 대가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Uber)나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이에 해당함
2)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he EU: Mapping and Business Models, 2021.06.14.,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399&furtherPubs=yes>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고용주로 추정됨

-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보상 수준의 상한선을 결정하거나 설정한 경우
 -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모 또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행동 등 구속력 있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 수행을 감독하거나 작업 수행의 결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 작업시간 혹은 휴식시간을 선택하거나, 작업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도급업체 또는 대체업체 이용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
 - 플랫폼 종사자가 자체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거나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측, 플랫폼 기업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또한,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성과 평가, 모니터링, 감독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용되는지 노동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때, 노동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당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은 관련 정보를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나아가 플랫폼 기업은 정기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수, 이들의 계약형태 등 고용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정보를 당국에 공유하여야 함
- EU 의장국과 집행위원회는 의회가 의결한 입법지침안을 토대로 회원국 정부와 최종 입법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협의 완료 시 EU 법률로 게시될 예정임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잠정 협정안 타결

박진하*

- 지난 3월 4일,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제5차 정부간회의¹⁾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²⁾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타결됨
 - 바다 표면적의 약 67%인 공해 지역 내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흡한 해양 관리규범체계를 보완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함.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 형성을 목표로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됨
 - 동 협정은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심해저협정(The Implementing Agreement Set up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1994), 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1995)에 이어 약 30년 만에 타결된 다자조약³⁾이며, 공해 지역의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임
- 타결된 잠정 협정안은 4가지 주요 영역(Part)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하 ‘이원지역’)에서 채집(collection)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명시함
 - 해양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공유 체계를 수립함. 개발도상국의 해양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공해상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한 재정 자원 메커니즘(Financial Resource and Mechanism)을 제시함
 -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jhpark@cgs.or.kr

- 1) 5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New York
-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은 공해, 심해저 등 연안국이 관할하는 영역 이외의 모든 해양 지역을 의미함
- 3) 동 협정 논의는 2004년 시작되어 9차례의 작업반회의(Working Group, 2006~2015년), 4차례의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2016~2017년), 5차례의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2018~2023년) 끝에 마련됨

- 이원지역 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방식으로 구역기반의 관리수단을 제안 및 구축함
 - 해당 수단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이원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함. 더불어 시행된 평가 결과의 시의성 있는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개 시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범위를 명시함
 -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한 활동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의 전문가에게 평가 과정과 관련한 조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의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 위의 3가지 영역을 포괄한 협정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양기술의 이전에 관한 조건, 방법 및 유형을 제시함
 -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와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위원회 등 협정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함
- 본 협정안은 향후 UN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공식으로 채택될 예정임. 각국은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및 비준 절차 준비, 필요한 자국 입법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BBNJ 협정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⁴⁾에 참여하며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정부는 동 협정안의 공식 채택 후 서명과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국내 법안을 정비할 계획임⁵⁾
 - (EU) 각국의 비준 및 이행 방안 수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할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이를 촉진하기 위해 4천만 유로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⁶⁾
 - (미국) 지난 1월, BBNJ 협정을 위한 국가연합에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6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⁷⁾

4)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 2022)에서 출범하였으며 신속한 BBNJ 협약 타결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국제 연합임. 현재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음(2023.3월 기준)

5) 외교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안 협상 타결, 2023.03.05.,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431&page=1

6) EC, Ocean biodiversity: global agreement on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and biodiversity in high seas, 2023.03.05., https://cyprus.representation.ec.europa.eu/news/ocean-biodiversity-global-agreement-protection-and-sustainable-use-resources-and-biodiversity-high-2023-03-05_en

7) US Department of State, U.S Delegation Announced \$6 billion USD in Commitments to Address Threats to Our Ocean, Doubling Last Year's Pledge, 2023.03.03., <https://www.state.gov/u-s-delegation-announced-6-billion-usd-in-commitments-to-address-threats-to-our-ocean-doubling-last-years-pledge/>